

2020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연 수 구
감 사 실

I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연수3동, 동춘1동, 동춘3동,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 대상 범위
연 수 3 동	2020. 6. 22. ~ 6. 25.(4일)	2017. 5월 ~ 2020. 4월 추진업무 전반
동 춘 1 동	2020. 6. 29. ~ 7. 2.(4일)	2017. 6월 ~ 2020. 4월 추진업무 전반
동 춘 3 동	2020. 6. 1. ~ 6. 4.(4일)	2017. 6월 ~ 2020. 4월 추진업무 전반
송 도 1 동	2020. 6. 8. ~ 6. 11.(4일)	2017. 6월 ~ 2020. 5월 추진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5명☐ 중점 감사부분

- 예산·회계(공사 및 계약 포함)
- 주민자치센터
- 주민등록 및 인감
- 사회복지 등

조 치 계 획

☐ 총 지적 건수 - - 총 53건 처분

- 행정상 조치 -- 53건 (시정요구 38건, 주의요구 15건)
- 재정상 조치 -- 15건 (590,710원 회수, 89,700원 환급,
34,100원 추징, 1,010원 추급)

II

지적사항

제목	1. 산재보험료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건설공사를 계약하면서 설계내역서에 산재보험료가 과다·과소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요율을 적용한 상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처분 요구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2.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하므로 통상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착오 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정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관리토록하고, 최종검사 및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처리하도록 “주의·시정 요구” 조치
제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관리비를 준공 시까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감액조정하지 않고 과다 지급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과다 지급한 안전관리비(149,690원)를 회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제목	4.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청사 ○○○ ○○ ○○용역(건축, 기계, 토목, 조경) 외 1건의 용역을 계약하면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 계약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5.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 □□ 공사를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공사 계약에 대하여 인지세(40,000원)를 납부(전자수입인지 첨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6.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 △△△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아 공사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7.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 ▲▲▲▲▲▲ 용역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하지 않았으며, ■■■■ ■■■■공사(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아 계약업체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처분 요구 사항	미매입한 지역개발채권(265,000원)을 징구하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8. 물품 구입 검사(수)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물품구매 시(소모품 제외) 이에 대한 검사(수)를 하여야 함에도 물품을 구입 후 지출결의서의 검수란에 검수인을 확인 날인하거나, 검사(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물품 검사(수)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9. 국내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관내출장 여비로 실제 출장한 자에게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 사용 시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대상 기간 중 국내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사항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내출장여비 총 180,000원을 회수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0.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않고, 사용대장을 미작성하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11. 통장 (월정)수당 및 명절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월정수당의 지급방법 중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위·해촉한 통장의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착오 지급하였음. 또한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 지급은 매년 설날, 추석에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착오 지급한 통장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회수(17,340원) 및 추급(1,010원)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시정 요구” 조치
제목	12. (주민자치분야)회계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자치센터 지출증빙 서류(출석부, 거래명세서 등)를 지출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지 않고 대금을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음. 또한 음악저작권료(2018년 6월분)를 지급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며, 2018년 ○○○○○○ ○○○○에 출연한 공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 ◆◆◆◆◆◆ 및 ●●●●●●●● ●●●●●● 방문에 따른 간식 구입 시 주류를 구입하였으며, 일체의 현금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 음향 및 출연료를 현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미첨부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공연자 출연료 지급분(7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체료 및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243,680원)을 회수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시정 요구” 조치
제목	13. (주민자치분야)시설장비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물품관리 대장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시설 및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주민자치센터에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시설·장비 물품관리대장)에 의거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4. (주민자치분야)차량 임차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사업) 진행을 위하여 버스를 임차하면서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사항, 계약당사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차된 차량의 정기검사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임차된 차량의 정기검사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받아 차량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손해방안을 마련하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 중 일부만 받고(지출증빙 서류 일부 누락)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손해방안 등은 마련하지 않는 등 차량 임차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미첨부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5. (주민자치분야)물품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물품대금 등을 지출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않아 구비서류 확인 소홀.
처분 요구 사항	미첨부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6. (주민자치분야)강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강사 위촉 시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강사를 위촉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17.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작성·관리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각 개인 해당번호에 담당·주무 소인 대신 담당자의 소인을 날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에 주무도장 날인을 누락함.
처분 요구 사항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에 담당·주무의 도장을 날인하여 관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8.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신청자 및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잘못 계산하여 부과함.
처분 요구 사항	미부과한 과태료(10,000원)를 추징, 과부과한 과태료(19,000원)을 환급처리하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개명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미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하거나,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를 미부과하였고, 분실사유인 경우에는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900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처분 요구 사항	미부과한 과태료(24,100원)를 추징, 과부과한 과태료(35,000원)을 환급처리하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0. 가족관계의 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1항에 의거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제84조(사망 신고 와 그 기재사항)제1항에 따라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정액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출생 신고 및 사망 신고 지연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지연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부과함
처분 요구 사항	과부과한 가족관계 과태료(34,000원)을 환급처리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1.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시 잘못 발행 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 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였어야 하나, 인증기 수 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 시 결손서류를 누락하거나 다른 서류로 오인하는 등 일일결산 업무 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수입증지 수입금 과납분(1,700원)을 환급처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소유주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표지, 사망으로 인하여 장애 자격이 소멸한 대상자에 대한 표지에 대해 정비를 통하여 회수/폐기, 무효처리 등의 정비 조치를 하여야 하 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대여 및 리스차량>표지 발급의 경우 관련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영구로 입력하여 발급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표지 정비 및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소유주 변동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표지에 대하여 정비, 대여 및 리스 주차표지에 대한 유효기간을 계약서 상 계약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3.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아동급식 신청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작성한 조사표를 첨부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급식대상자를 선정하 였으며, 2020년도 신규 아동급식 선정 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지 않는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2020년 신규대상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미등록된 아동에 대하여 등록 처리하고,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 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4.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7명중 급여관리 제외자에 해당하는 5명을 제외한 2명 중 1명에 대하여 2019년 상·하반기 급여관리 확인·점검을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2019년 상·하반기 급여관리 확인·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확인 점검을 이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 시정 요구 ” 조치